

결핵(흉부촬영) 및 잠복결핵검진(혈액검사 또는 TST)
두 검사 모두 필수 검진(하나만 수검하는 것 아님!)

서식 **결핵검진 등 이행 점검표 (검진의무기관)**

결핵검진 등 이행 점검표			
기관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학교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치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동복지시설		
기관명		연락처	
기관장 성명		기관장 연락처	
기관주소			
점검자		점검일	7.1.-7.12. 중 가능한 일자 선정
결핵검진 등 점검 사항			
○ 점검 최종 결과: <input type="checkbox"/> 준수 <input type="checkbox"/> 위반 <small>점검확인 완료 후 체크</small>			
※ 결핵예방법 제34조 1항에 따라 결핵검진 등 미이행시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			
점검내용	점검확인		
	예	아니오	
[1] 전체 종사자수 (점검일 기준) <small>([3]신규 채용 및 복직한 종사자수 + [4]기존 종사자)</small>	<small>기관 전체</small> 종사자수 기입 명		
「근로기준법」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를 확인하였음 <small>종사자 명부 비치 여부 체크</small>	예	아니오	
고용의 형태(직접, 간접고용(용역, 도급, 위임))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·학교 등의 장의 지휘·감독하에 해당 기관·학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수를 모두 확인하였음	예	아니오	
[2] 제외 대상자수 (점검일 기준) [2-1]+[2-2]	명		
[2-1] 기왕력자 수 <small>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 수 기입, 증빙서류 비치 필요</small>	명		
과거 결핵이나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 완료한 자,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자는 제외하되, 제외 증빙서류를 확인하였음	예	아니오	
[2-2] 점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 수 <small>[참고예시] 예를 들어, 7.1. 점검 시 6.2.-7.1. 신규 채용 인원수 기입</small>	명		
점검일이 2024.7.1.이면, 2024.6.2.-7.1. 신규 채용 또는 복직한 자			
[3] 신규 채용 및 복직한 종사자수 (2024년 1월 ~ 점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)	명		
[3-1] 결핵검진 (흉부촬영)			
[3-1-1] 결핵 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수 <small>흉부촬영 또는 객담검사 시행자 수이며, 신규채용+복직자 수와 같아야함</small>			명
[3-1-2] 결핵 검진을 미시행한 사람의 수 <small>미시행자수가 있으면, 점검 위반</small>			명

[3-1-3] 결핵 검진(흉부촬영 또는 객담검사 등) 시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증빙서류 보관 필수	예	아니오
[3-2] 잠복결핵감염 검진 흉부촬영과는 별개로 각각 시행해야 하며, 복직자의 경우 재직 기간중 1회 시행한 경우 실시해 해당		
[3-2-1]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수 신규채용+복직자 수와 같아야함		명
[3-2-2]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미시행한 사람의 수 미시행자수가 있으면, 점검 위반		명
[3-2-3] 잠복결핵감염 검진(IGRA/TST)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증빙서류 비치 필요	예	아니오
[4] 기존 종사자*수 (점검일 기준)		명
기존 종사자: 전체 종사자 - 2024년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 - 제외 대상자	예	아니오
[4-1] 2023년도 결핵검진 (흉부촬영)		
[4-1-1] 결핵 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수		명
[4-1-2] 결핵 검진을 미시행한 사람의 수 미시행자수가 있으면, 점검 위반		명
[4-1-3] 결핵 검진(흉부촬영 또는 객담검사 등)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증빙서류 비치 필요	예	아니오
[4-2] 2023년도 잠복결핵감염 검진		
[4-2-1]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수		명
[4-2-2]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미시행한 사람의 수 미시행자수가 있으면, 점검 위반		명
[4-2-3] 잠복결핵감염 검진(IGRA/TST)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음 증빙서류 비치 필요	예	아니오
[5] 결핵 감염 고위험군 종사자수 (점검일 기준) ※ 의료기관만 해당		명
결핵 감염 고위험군 종사자가 근무하는지 여부 결핵환자를 검진, 치료하는 의료기관만 해당, 나머지 기관은 공란으로 제출 ①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하는 「의료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」 ②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「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③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(간호조무사)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사람	예	아니오
[5-1] 결핵감염 고위험군 종사자 중 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시행한 사람의 수		명
<p>상기 기관장은 점검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년 월 일 기관장: (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관장 서명 및 날인</p>		